

남전주IC 서히스타힐스

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

1 공급 개요 및 일정

- ☐ 위 치 :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323번지 일대
- ☐ 공급 규모 : 아파트 지하 1층, 지상 28층 5개동 총 613세대
- ☐ 공급 개요

(단위: m²)

구분	주택형 (약식표기)	세대별 계약면적(㎡)					공급세대수	입주예정시기
		세대별 공급면적			기타 공용면적 (주차장포함)	계약면적		
		주거전용	주거공용	소계				
민영 주택	59	59.8413	21.5027	81.3440	26.0714	107.4154	20	2025년 05월 (예정)
	84A	84.6899	29.0044	113.6943	36.8972	150.5915	6	
	84B	84.6899	29.0039	113.6938	36.8795	150.5733	-	

※ 상기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 인천시청의 승인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- ☐ 기관추천 유형별 배정세대 내역(전용 85m²이하 주택 건설량 10%범위)

(단위:세대)

구 분	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(예비입주자)			
	59	84A	84B	계
장애인	4(12)	1(3)	0(0)	5(15)
국가유공자/보훈대상자	4(12)	2(6)	0(0)	6(18)
장기복무 제대 군인	4(12)	1(3)	0(0)	5(15)
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	4(12)	1(3)	0(0)	5(15)
중소기업 근로자	4(12)	1(3)	0(0)	5(15)
합 계	20(60)	6(18)	0(0)	26(78)

※ 2018.05.04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6조의2에 따라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, 특별공급접수 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.

□ 분양일정

구분	일자	참고사항
입주자 모집공고(예정)	2022.08.26.(금)	일간신문 및 남전주IC 서히스타힐스 홈페이지(http://www.sjic-starhills.co.kr)
건본주택 개관(예정)	2022.08.27.(토)	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494-7 남전주IC 서히스타힐스 건본주택
특별공급 접수일시(예정)	2022.09.05.(월)	인터넷 청약접수(09:00~17:30) 청약홈(https://www.applyhome.co.kr) 사이트 통한 청약 접수 ※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
당첨자 및 동·호수 발표(예정) (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)	2022.09.16.(금)	한국부동산원(특별공급 및 일반공급) 청약홈(https://www.applyhome.co.kr) 또는 청약홈 앱에서 조회가능

- ※ 상기일정은 업무 추진 중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 한해 건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.
(10:00 ~ 14:00 / 공인인증서 필히 지참, 은행창구 접수 불가 / 방문주소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 바람)

2

특별공급 자격

- 신청자격
- 대상자 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.
(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,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)
 - ※ 청약자격요건 :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(지역별/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

[청약예금의 예치금액]

구 분	특별시 및 부산광역시	그 밖의 광역시	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
85㎡이하	300만원	250만원	200만원

- ‘무주택세대 구성원’의 정의
- 2021.11.16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2호의3, 제2조의4에 의거 ‘세대’ 및 ‘무주택세대구성원’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.
- “세대”란, 다음 각 목의 사람(이하 “세대원”)으로 구성된 집단(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)
- 가. 주택공급신청자
- 나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
- 다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
- 라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
- 마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

-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
1.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‘무주택세대구성원’이 아닌 자
단,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유주택이어도 청약가능.
 2.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 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(과거 신혼부부 특별공급, 다자녀 우선공급, 노부모부양 우선공급,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은 자 포함)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(특별공급은 한차례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공급함)

- ☐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☐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, 해당기관에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(청약홈) 신청하여야 하며, 미 신청시 당첨자 선정(동·호배정) 및 계약 불가합니다.
- ☐ 당첨자에 대한 동·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(한국부동산원)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(미신청, 미계약 동·호 발생시에도 동·호 변경 불가)
- ☐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.
- ☐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,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**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**하여야 하며,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☐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, 타 특별공급(신혼부부, 다자녀, 노부모부양, 생애최초)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,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, 당첨자 명단관리, 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.
- ☐ 첨부되는 제출서류가 허위서류로 판명될 경우 청약 당첨 후에 계약을 하여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되며,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견본주택 대표번호(1644-7145)로 문의주셔서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☐ 이 밖에 기타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.